
2014~2016년도 자체감사 주요 현지도치 지적사례



2017. 7.

서 울 대 학 교
[상 근 감 사 실]

2014~2016년도 자체감사 주요 현지조치 지적사례

□ 계약, 시설공사 처리 부적정

-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음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 물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G2B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안내 공고를 하는 등 소액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결정·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분할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또한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 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 단위기관에서 설치 공사를 하면서 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하여 계약서와 달리 설치되었음에도 비용 지불
-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면적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준공검사를 소홀
- 청소 용역계약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대상임에도 한 업체와 매년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음

-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계약, 1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하면서 G2B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분할)수의계약 체결
- 공사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간접비 예산은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 경비 등 연구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해야 함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 사업비는 반드시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사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

- 간접비 예산에서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획·조정·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부원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비서 업무 등 간접비 사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
- 박사학위 논문 외부 심사료를 간접비 예산에 편성하여 외부 심사위원에게 박사학위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
-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해 사업목적 외로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개강좌 홈페이지 구축에 사업비를 집행
- 교내연구과제 경비를 위해 대학(원)운영 및 교육비에서 품의하고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는 대학(원)운영 및 교육비, 나머지는 공개강좌 예산에서 분할 지출하여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

□ 회계처리 부적정

-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는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함

【국고금 관리법 등】

-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자는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지침】

- 고유번호증 보유기관에서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함

【법인세법 등】

-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함

【서울대학교 상품권 관리 지침】

-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회의비, 행정실 운영비 등을 개인카드로 집행하여 정산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위임 및 이사장 통보 없이 부원장이 전결로 발전기금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약권한이 없는 학과장이 직접 계약 체결
- 단위기관에서 공개강좌 수강료에 대해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를 발급
- 상품권을 구매 관리하면서 관리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수령인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